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14

발의연월일: 2024. 7. 9.

발 의 자:조정식・민병덕・정성호

김성환 · 김재원 · 염태영

노종면 • 박홍근 • 이해식

정을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부업의 등록요건 중 자기자본 요건을 최하 1천만원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에서는 법인만 등록이 가능한 금융위원회 등록대상은 3억원 이상으로, 시·도 등록대상의 경우 법인은 5천만원 이상, 법인이 아닌 자는 1천만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도 등록 대부업의 자기자본 요건이 지나치게 낮아 영세한 대부업자가 난립하고 등록 및 폐업이 빈번하여 서민층의 금융 피해가 증가하고 행정력이 낭비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률에서 정하는 대부업의 최하 자기자본 요건을 현행 1천만 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함으로써 영세한 대부업자의 난립과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항제2 호).

법률 제 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5제1항제1호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본문 중 "1천만원"을 각각 "1억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5제1항제1호 본문 및 같은 조제2항제2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조제3항 또는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5(등록요건 등) ① 제3조	제3조의5(등록요건 등) ①
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u>.</u>
1. 1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	1. <u>1억원</u>
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법인이 아닌 경우에	
는 순자산액)을 갖출 것. 다	,
만, 대부중개업만을 하려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하	2
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	
을 갖추어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1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	2. 1억원
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다만, 대	<u>.</u>
부중개업만을 하려는 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